

Deloitte.



2023.05 | 제2호

기업지배기구 *Insights*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에서는
기업지배기구 관련 이슈를 분석하고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기업지배기구 *Insights*를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Contents

I. 전문가 기고

- ①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ESG 감독 시 고려사항 • 04
- 한국 딜로이트 그룹 리스크자문본부 김학범 파트너
- ② 상장기업 선진 감독방안은 무엇인가? • 07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박재환 교수

II. CCG 아젠다

- ①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의 이사회 거버넌스와 전략 • 10
- ② FY2022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 17

III. 데이터 포인트

- ① FY2022 KOSPI 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교육 현황 • 30

IV. 주요 규제 동향

- ①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 • 38
-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및 회계부정신고 제도 정비의 법제화
- ② ISSB, SASB 기준 국제적용가능성 개선을 위한 방법론 공개초안 발표 • 44

V. FAQ

- ① 사외이사 겸직 • 46
- ② 배당절차 개선방안 적용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 • 48

목차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며,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본 센터의 다양한 발간물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I. 전문가 기고 1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ESG 감독 시 고려사항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리스크자문본부 김학범 파트너

서언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같은 기업지배기구와 ESG 용어가 조합을 이루면 개념적인 내용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유지와 성장에 기초가 되는 개념일 수 있다는 의미로도 읽혀진다.

대형 그룹사중 하나는 과거에 일련의 부정행위와 책임 회피 문제로 인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감사위원회의 감독 부실로 인해 심화되었을 수 있다. 그룹의 일부 계열 회사에서는 회계의 부정 행위나 책임 회피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사건은 감사위원회가 이러한 부정행위를 탐지하고 예방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다른 그룹은 대한민국의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그룹사로, 일부 계열사에서 환경 오염 사건을 일으켰으며, 이는 그룹의 감독 및 관리 부족으로 비판 받은 사례이다. 과거 계열사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CO₂) 유출 사건으로 인해 광범위한 환경 오염과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으며, 이는 감독의 부실과 환경 리스크 관리의 실패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ESG 감독 부재로 인해 실제 문제가 발생한 한국 기업들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감독 및 관리 체계의 강화, ESG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사회 및 환경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강력한 리더십의 필요성을 반증하고 있다.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ESG 감독의 중요성

ESG 문제에 대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같은 기업지배기구의 감독이 부재하면 전략의 정의가 잘못되고, 위험 관리가 부적절하며, 보고가 불완전하며,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취약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ESG 중심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평판 손상, 법적 및 규제 리스크, 재정적 손실 및 경쟁 우위 상실과 같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부적절한 ESG 전략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적절한 감독이 없다면 기업에 명확한 ESG 전략이 부족할 수 있다. 이로 인해 ESG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성과 집중력이 부족하여 지속 가능한 관행, 리스크 완화 및 가치 창출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은 환경 풋프린트¹⁾를 줄이거나 사회적 영향을 개선하기 위한 명확한 목표와 목표를 설정하지 못해 이러한 분야에서 진전이 없을 수 있다.

1) 탄소발자국은 환경성적표지 환경영향 범주 중 하나로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온실가스)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나타낸 지표이며 라벨형태로 제품에 표시됨.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임

I. 전문가 기고 1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ESG 감독 시 고려사항

- 취약한 리스크 관리

ESG 리스크는 기업의 평판, 재무 성과 및 장기적인 실행 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감독 없이 이러한 위험의 식별,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주의가 부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은 운영과 관련된 잠재적인 환경 위험(예: 오염 또는 자원 고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적 또는 규제 문제, 평판 손상 및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보고

ESG 보고는 투자자, 고객, 직원 및 규제 기관을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 사항이 증가하고 있다.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감독 없이 강력한 보고 프로세스가 부족하고 중요한 ESG 정보가 부적절하게 공개될 수 있다. 이는 이해관계자의 기업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은 관련 환경 사건이나 사회적 논란을 공개하지 못해 투명성이 떨어지고 법적 또는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이해 관계자 참여 부족

ESG 문제는 직원, 커뮤니티, 고객 및 투자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감독 없이 기업은 이해관계자 대화를 위한 효과적인 채널을 구축하는 것을 게을리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이해관계자의 관점과 우려를 통합하지 못할 수 있다. 이는 긴장된 관계, 이해관계자 행동주의 및 평판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ESG 감독 시 고려 사항

- ESG 위원회 설립

이사회는 ESG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기존 위원회에 ESG 감독 책임을 할당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ESG 사항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관련 배경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의 역할은 기업의 ESG 전략을 개발하고 시행하며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ESG 관련 문제를 전체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 전략적 계획에 ESG 통합

이사회는 ESG 고려 사항이 기업의 전략적 계획 과정에 통합되도록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잠재적인 ESG 리스크와 기회를 평가하고 기업의 장기적인 목표를 지속 가능한 관행과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사회는 ESG 요소가 기업의 재무 성과, 평판, 사회적 인가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평가해야 한다. 또한, 최근 ESG 동향과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I. 전문가 기고 1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ESG 감독 시 고려사항

- ESG 보고서 검토 및 승인

기업지배기구는 ESG위원회 또는 자체적으로 기업의 ESG 성과, 이니셔티브, 목표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기적인 ESG 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주요한 ESG 지표, 목표에 대한 진척 상황, 중요한 ESG 리스크의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사회는 보고서가 투명하고 일관성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보고 프레임워크인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나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에 부합되어 외부 공시가 이루어 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ESG 데이터 및 보고 시스템 모니터링

기업지배기구는 기업의 ESG 데이터 수집, 측정 및 보고 시스템 감독 역할 또한 중요하다. 경영진이 정보의 정확성과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내부 통제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감독이 필요하다. 이는 데이터 수집 과정, 데이터 품질 보증 조치 및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비재무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보고하는 기업의 능력도 평가해야 한다.

- 내부 감사 과정에서 ESG 리스크 고려

감사위원회는 기업의 내부 감사 과정 중에 ESG 리스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위험 관리 시스템이 ESG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식별하고 대응하는지, 적절한 통제가 마련되어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ESG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기업의 정책, 절차 및 관행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중요한 ESG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과 완화 노력의 효과 또한 평가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법적 및 규제적 변화 모니터링

기업지배기구는 변화하는 ESG 관련 법률, 규제 및 보고 요구사항을 주시해야 한다. ESG에 관련된 규제와 표준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따라 기업의 ESG 전략과 보고서를 조정해야 변화사항에 따른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및 대응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I. 전문가 기고 2

상장기업 선진 감독방안은 무엇인가?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박재환 교수

서언

최근 감독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지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기업 단체의 주장이 거세다. 전 세계적으로 감독당국이 감사인을 전면적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없으며,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감사인은 회사를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감사 절차가 비효율적이라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지정 감사인은 지정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높은 감사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를 요구하는 등 고압적인 감사로 인해 기업의 불만이 있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형 분식회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6년 감사인 자유선임 후 3년을 감사인 지정하는 주기적 지정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외부감사법이 2018년에 도입되었다. 주기적 지정제는 독립성이 확보된 지정감사인에게 공정한 시각에서 철저한 감사를 수행하도록 하여 감사실패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감독당국의 감리주기가 15여년으로 너무 길어 지정감사인에게 주기적인 감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지정감사인 제도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지배구조는 독립성을 갖추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마저도 여전히 지배권을 가진 경영진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도 반영한 것이다.

최근 부각되는 자본시장 감독 이슈

최근 외국계증권사인 S사를 통해 대량 매도 물량이 집중되면서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에 대한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과 검찰이 본격 조사에 착수하였다. 이전 정부 시절의 라임, 옵티머스 등 대규모 펀드 사태에 이어 최근 오스템임플란트를 비롯한 여러 기업에서의 횡령 사건의 여파가 진정되기도 전에 또다시 주가 조작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자본시장에서의 사건이 대규모화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양상도 더욱 광범위하다. 거기다 최근 사건들을 살펴보면 요즘 벌어지는 일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후진적인 양상마저 보인다. 엄격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제가 덜한 사모펀드를 이용한 상품 판매와 내부 통제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대규모 횡령 사건에 이어, 자기 계좌가 개설된 핸드폰을 전부 넘겨주는 일탈 행위로 다단계 주가 조작 사건까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차액결제제도(CFD)까지 활용되면서 주가 하락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차액결제 투자가 외국인 투자자로 표시되면서 시장의 왜곡이 더욱 심화 되었다. 특히 이번 SG 사건은 오랜 기간 부정거래 행위가 지속되면서 상당수 일반인들도 범죄행위에 부지불식간에 빠져들게 되어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I. 전문가 기고 2

상장기업 선진 감독방안은 무엇인가?

사건 발생 전에 이런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한 자본시장의 감독시스템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지난 대형 사건과 같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진상파악에 여념이 없다. 사건이 파생상품 등 복잡한 금융상품을 이용하고 대규모화되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금융 및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훼손되고 있다. 부족한 감독체계 외에도, 이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에는 자본을 조달하는 주체들의 책임과 윤리의식 부재, 특정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정보를 소유한 특정인에 의한 시장 악용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실질적인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 시장 악용으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이 발각될 위험과 제재 불이익보다 여전히 상당히 큰 점도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연이어 발생하는 대규모 사건을 고려할 때, 자본시장 감독은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이를 신속하게 식별하여 예방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기적 지정제가 회계투명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예방 역할이 있으나 로컬회계법인의 시간당 감사보수가 Big 4 회계법인의 보수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자유수입 시장과는 다른 시장의 왜곡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의 왜곡 이외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감사인의 투자와 노력을 견인하지 못하는 부작용도 있다. 주기적 지정제도는 감독당국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을 통하여 지정감사인에게 일종의 감독기능을 맡긴 제도이므로 이를 지속가능하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상장기업 감독의 핵심사안과 관련 사례

상장기업 감독의 핵심은 예방 기능을 수행하여 기업의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 각자의 지배구조가 자율적으로 교정과 개선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회계감독을 회계뿐만 아니라 공시와 내부통제, Compliance를 포함하는 기업 통합모니터링 감독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신중히 고려해 볼 만 시점이다.

유사한 사례로 미국 SEC 기업금융부(Division of Corporation Finance)가 상장회사를 감독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이는 기업 중심의 자본시장 통합 감독시스템으로 상장기업의 정기 및 수시를 포함한 모든 공시 및 기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조사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SEC는 최소 3년 주기로 기업의 회계기준 준수를 비롯한 공시사항과 자본시장 법규 준수, 영업 및 재무활동과 관련된 통제 및 주요 정보항목이 포함된 질문서를 보낸다. 질문서는 동종업계와 비교하여 주가 변동이 크거나 주가와 영업이익 간의 불균형, 불투명한 거래 등을 포함하며 투자자 관점에서 작성된다.

I. 전문가 기고 2

상장기업 선진 감독방안은 무엇인가?

이후 각 사안에 대한 적절한 수정과 공시를 요구하는 Comment letter를 보내어 실효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업과의 응답 과정을 통해 기업이 스스로 바로잡도록 유도하여 사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한다.

결언 - 상장기업 선진 감독방안은 무엇인가?

통합모니터링 방식의 감독은 산업 및 기업별 정보를 종합하여 기업의 전반적인 위험평가를 수행하며, 효과적인 감시와 조정 그리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다. 이러한 통합모니터링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자본시장 관련 감독기관의 업무영역을 조정하고, 기관 내의 각 부서의 역할을 조정해야 하는 현실적인 난제가 있다. 하지만 연이은 대규모 사건들로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면서,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이 효과적인 자본시장 감독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적절한 시점으로 보인다.



II. CCG 아젠다 ①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의 이사회 거버넌스와 전략¹⁾

요약

- 글로벌 팬데믹으로부터 엔데믹 일상으로의 회복은 힘든 여정이며, 글로벌 권역간 회복과정은 고르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유는 인플레이션 등이 주요 요인임
- 이사회 차원에서 이러한 이슈의 해결을 위해 데이터의 홍수속에서 넘쳐나는 업무와 관련한 경제 데이터를 선별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해졌음
- 이사회 인플레이션 압력(또는 기타 경제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선제적 전략 수립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기업의 사업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경제전문가의 브리핑에 정기적으로 참여한다던지 다양한 시나리오 수립을 통한 일련의 준비작업들은 현재의 위기상황을 돌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이사회 경제 위기상황 극복과 관련한 준비작업 실행은 왜 중요한가?

최근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변화가 심했다고 요약될 수 있다. 팬데믹이 확산된 초기에 대다수는 글로벌 무역이 교착상태에 빠짐에 따라, 대규모 락다운(봉쇄령)이 심각한 수준의 글로벌 침체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되었다. 그러한 우려사항은 일부 현실로 나타났는데, 글로벌 팬데믹 발생 직후 단기간 동안 각국 경제는 거시적 차원에서 침체기에 빠졌다. 그러나 기업들은 팬데믹의 “뉴노멀”(신기준)에 적응하고, 완만한 경제회복 과정이 가동되면서 기업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하락수준의 바닥을 딛고 빠른 회복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 권역별로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과정은 유사하지 않았는데, 가장 큰 요인은 인플레이션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안을 중심으로 한 이사회 전략수립에 있어서는 다량의 경제 데이터 해석을 고려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비용절감은 여기에서 표준적인 대응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며, 경제적 회복탄력성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옵션(선택권)을 고려하는 것은 가치가 있어 보인다. 일례로, 경제적 변동성이 있는 시기는 이사회에 부여된 스튜어드십 책임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보여진다. 이러한 조치들은 사회적 자본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와도 유사하다. 이는 미국 달러화로 측정되는 투자대비효과와는 다른 개념이지만 이와 유사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1) 딜로이트 글로벌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On the Board's Agenda - Board governance and strategy in a changing global economic landscape」 2023년 4월호

II. CCG 아젠다 ①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의 이사회 거버넌스와 전략

<그림 1> 엔데믹에 대응하는 이사회 자세



경제 데이터의 홍수

오랜 기간동안 거시경제 환경은 이사회 관심 대상이었지만 현재 경제력 또는 경제적 영향력의 집합은 매우 혼란스러운 지형도를 보여주고 있다.²⁾ 미국과 글로벌 권역 국가의 경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의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지만,³⁾ 그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보이기도 한다.⁴⁾ 거버넌스 및 감독의 관점에서, 이사회가 인플레이션 또는 일반적인 경제적 변동성에 대해 어떻게 최상의 전략을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다고 느낄 수 있다.⁵⁾ 이러한 정보와 데이터의 부족은 경제 상황에서 촉발된 이사회 행동을 비즈니스, 사회 및 정치적 변수와 분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반영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2) Daniel Bachman, United States Economic Forecast, Deloitte Global Economist Network (Deloitte Insights), accessed February 7, 2023.

3) Since spiking in April 2022 and through the time of publication, the 10-year Treasury breakeven rate has generally declined. The rate represents one way of measuring future inflation expectations from investors. The metric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nominal yield of a bond and the yield of an inflation-linked bond of the same duration. See Stefania D'Amico, Don Kim, and Min Wei, Tips from TIPS: The informational content of Treasury Inflation-Protected Security Prices,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FEDS) 2014-024 (Washington, DC: Federal Reserve Board, 2016).

4) John H. Cochrane, 「Inflation past, present and future: Fiscal shocks, Fed response, and fiscal limits」, Working Paper 30096 (Cambridge, M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May 2022).

5) Roberto Moro Visconti, 「Inflation risk, wealth expropriation and governance implications」, Corporate Ownership and Control 10, no. 4 (2013): pp. 329-40.

II. CCG 아젠다 ①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의 이사회 거버넌스와 전략

글로벌화되고 상호 연결된 사회에서, 많은 기업들은 다국적 규모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권역의 경제 상황은 국가별로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장별로 다양하거나 상이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차별화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의 경우, 불리할 수 있는 경제적 압력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이 제품마다 다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과 기타 경제 지표는 산업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영향은 부문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몇 년 동안 인플레이션과 기타 경제적 악재로 가격이 급등했던 컴퓨터 칩을 생각해 보라.⁶⁾ 이러한 가격 상승에 대하여 기업들이 해당칩의 공급자인지 수요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수립하는 전략은 크게 달라진 것이다.

경제적 회복탄력성 측면에서 상위수준 전략과 최고경영진 간의 경계는 이사회 참여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⁷⁾ 어떤 기업의 경우, 기업이 경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최고경영진에게 일임하는 것이 더 나올 수 있다. 다른 기업에서는 비즈니스의 성격이나 거버넌스 문화는 이사회가 최고경영진보다 세부적인 수준에서 관여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하지만 이사회 참여 수준과 관계없이 이사회는 최고경영진의 운영방식이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 혼란의 시기에는 단기조치와 장기성장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이사회 감독이 필수이기 때문이다.⁸⁾

6) John Mullin, 「Supply chain disruptions, inflation, and the Fed」, Federal Reserve Bank of Richmond Econ Focus, September 6, 2022.

7) David A. Nadler, 「Building better boards」, Harvard Business Review, May 2004.

8) Idoia Ferrero-Ferrero, María Ángeles Fernández-Izquierdo, and María Jesús Muñoz-Torres, 「The impact of the board of directors characteristics on corporate performance and risk-taking before and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Review of Managerial Science 6, no. 3 (2012): pp. 207–26.

II. CCG 아젠다 ①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의 이사회 거버넌스와 전략

일반 대중과 마찬가지로, 이사회 멤버들은 경제 데이터의 홍수를 만난 상황이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회의와 같이 과거에는 어렵게 여겨졌던 주제들이 이제는 매일 저녁뉴스로 다뤄지고 있다. 데이터의 범람을 이해하고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이사진은 경제전문가가 제공하는 브리핑 메시지 수령을 주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기업의 특정 비즈니스 라인과 관련된 경제 환경에 대한 정기적 업데이트는 이사진이 보다 효과적인 감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2> 이사회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계획 수립



II. CCG 아젠다 ①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의 이사회 거버넌스와 전략

오늘의 경제 기상예보: 일부 화창한 가운데 인플레이션 가능성 존재

미래 경제 상황을 예상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도는 모든 예측에 대해 계획을 세우는 경우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글로벌 시장의 상호 연결성은 불확실성이 항상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무리 유능한 경제전문가라 할 지라도, 지정학 및 자연재해가 관련된 대규모 사건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제학자들이 2020년 연간 예측을 발표한 2019년 12월, 코로나19라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글로벌 경제 질서를 변형시킬 것이라는 것을 누가 알 수 있었을까? 이런 사유로, 여러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⁹⁾

딜로이트 글로벌의 연구결과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거시경제 환경을 다룰 때에도 조직의 회복탄력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오랜 기간 강조해왔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는 방법은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산업에 따라 적용방식은 다르지만, 비용절감 방식에는 구조조정, 임금 동결, 투자 전략 변경 및 기업의 부채조달계획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¹⁰⁾ 그러나 이러한 비용 절감 방식에는 이해상충관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비용 통제에 주력하는 기업은 새로운 틈새시장을 개척하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¹¹⁾ 특히, 이사회는 감독활동은 경제가 불확실한 시기에 장기성장을 희생하지 않는 차원에서 단기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다.¹²⁾

과거 가치중심체로서 기업의 역할은 많은 이사회에서 우선적으로 다루는 안건이 되었다.¹³⁾ 이는 지역 사회와의 관계 구축, 자선활동 및 유사 계획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가져오려는 기업수가 증가함을 의미한다.¹⁴⁾ 다만 이러한 활동은 일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부담을 줄이는 활동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 스투어드십의 가치를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해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제대로 작동된다면 사회적 자본의 형태로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¹⁵⁾ 기업이 원할때만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한다는 세간의 인식에서 탈피하는 것은 명백하게 해당 기업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9) Ira Kalish et al., 「Amid geopolitical complexity uncertainty persists」, On the board's agenda (Deloitte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May 2022).

10) Yee Peng Chow et al., 「Macroeconomic uncertainty, corporate governance and corporate capital struc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rial Finance 14, no. 3 (2018): pp. 301-21.

11) Bill Marquard, Andrew Grimstone, and Ira Kalish, 「Navigating your business through a recession」(Deloitte Development, September 2022).

12) Ferrero-Ferrero et al., 「The impact of the board of directors characteristics on corporate performance and risk-taking before and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13) Diana O'Brien et al., 「Purpose is everything: How brands that authentically lead with purpose are changing the nature of business today」, Deloitte Insights, October 15, 2019.

14) Jennifer Lee, Jeffery Weirens, and Don Fancher, 「Future of trust: Recovery for continued prosperity」, Deloitte, April 2020.

15) Teshanee Williams et al., 「Beyond bridging and bonding: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 organizations」,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57, no. 4 (October 2022): pp. 769-92; Punit Renjen, 「The value of resilient leadership: Renewing our investment in trust」, Deloitte Insights, October 2020.

II. CCG 아젠다 ①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의 이사회 거버넌스와 전략

오늘의 경제 기상예보: 일부 화창한 가운데 인플레이션 가능성 존재 (계속)

<그림 3> 가설적인 예측이 장밋빛으로 보일지라도, 예상치 못할 상황에 대비하십시오



II. CCG 아젠다 ①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의 이사회 거버넌스와 전략

이사회가 논의해야 할 사항

인플레이션 압력(또는 기타 경제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선제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복잡하지만, 기업의 사업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경제전문가의 브리핑을 청취하면 이사회가 더 나은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아래 이사회 논의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분야와 관련된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표 1>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하의 이사회 논의를 위한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 이사회는 내외부 경제전문가의 정기 브리핑 참석을 제도화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실시해야 합니까?
- 장단기적 차원에서 기업의 업종이나 사업 분야에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시 경제 시나리오는 무엇입니까? 각 시나리오의 신뢰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 상황이 이사회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이 전략 변경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 경제적 변동성이 심한 시기에 이사회 스튜어드십을 확대하여 경쟁 우위와 사회적 자본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까?



II. CCG 아젠다 ②

FY2022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요약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FY2021 상장회사와 FY2022 상장회사의 재무제표 감사의견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 의견을 분석하고 기업들의 중요한 비적정 사유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상장회사 2,427사의 FY2022 감사보고서를 분석하였으며, 분석대상 상장회사의 2,373사(97.8%)가 재무제표 감사 적정의견이고 전기대비(97.2%) 0.6%p 상승함
 - 최근 3개년간 큰 변동없이 적정의견 비율을 일정 수준 유지중임
 - FY2020 97% - FY2021 97.2% - FY2022 97.8%
 - 자산규모별 적정의견 비율은 기업규모가 낮을 수록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이며 자산 1천억원 미만 재무제표 감사 적정의견을 받은 상장회사는 848사(95%)로 가장 낮은 수준임
- FY2022 상장회사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 및 검토 의견을 받은 기업은 총 84사로 전기대비 10사가 감소함
 - FY2022 감사대상인 자산총액(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 1,579사 중 30사(1.9%)에서 비적정 감사 의견이 도출되어 전기대비 1.2%p 상승함
 - 검토대상인 자산총액(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 848사 중 54사(6.4%)에서 비적정 검토 의견이 도출되어 전기대비 1.7%p 상승함
 - FY2022기준 주요 비적정 사유는 '최고경영진의 부적절 행위'(25.8%) - '회계 전문성 확보 미비'(16.8%) - '범위 제한'(15.8%) - '자금 통제 미비'(10.4%) 순으로 나타났음
 - 미국의 경우 비적정 사유 중 '정보기술통제'(44.2%),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34.5%) 및 '적시에 정확한 공시가 이뤄지지 않음'(23.9%) 등 내부통제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비적정 의견 비중이 다수를 차지하여 국내 현황과는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었음
- 외부감사인이 FY2022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제시한 84사 중 경영진이 비적정의견을 낸 기업은 15사, 감사위원회가 비적정의견을 낸 기업은 20사로 의견불일치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해 경영진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체평가를 진행하고 감사(위원회)도 실효성 있는 평가활동 수행이 요구됨
- 최근 개정된 외부감사법 시행령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평가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인지 및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II. CCG 아젠다 ②

FY2022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배경

- FY2021 상장회사와 FY2022 상장회사의 재무제표 감사의견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 결과를 분석하고 기업들의 중요한 비적정 사유를 제공하고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FY2022에는 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이 특징이며 FY2023부터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부터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감사를 시행할 예정에 있음
 - FY2023부터 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의무는 면제되지만 외부감사인에 의한 검토는 실시되어야 함

<그림 1> 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일정¹⁾

자산 규모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조원 이상	검토	감사 의무화										
		계도 위주	본격 감리									
5천억원 ~2조원	검토	감사 의무화										
		계도 위주	본격 감리									
1천억원 ~5천억원	검토		감사 의무화									
			계도 위주	본격 감리								
1천억원 미만	검토											

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감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2021.7.1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내용을 도식화에 반영, 2023.01.17

II. CCG 아젠다 ②

FY2022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배경 (계속)

<그림 2> 연결 재무제표 기준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일정 ²⁾

자산 규모	'18년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조원 이상			-						감사 의무화		
						계도 위주			본격 감리		
5천억원 ~2조원				-					감사 의무화		
						계도 위주			본격 감리		
1천억원 ~5천억원					-				감사 의무화		
						계도 위주			본격 감리		
1천억원 미만						검토					

-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는 방대한 현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규정 중 필수 사항을 선별하고, 객관성을 확보한 평가 보고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음
- 이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상 보고자인 대표자/내부회계관리자와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감사(위원회)는 본 보고서에서 언급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및 내부통제 관점의 비적정 사유 등 현황 이해를 위한 기본자료를 제공받는데에도 의의가 있음

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감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2021.7.1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내용을 도식화에 반영, 2023.0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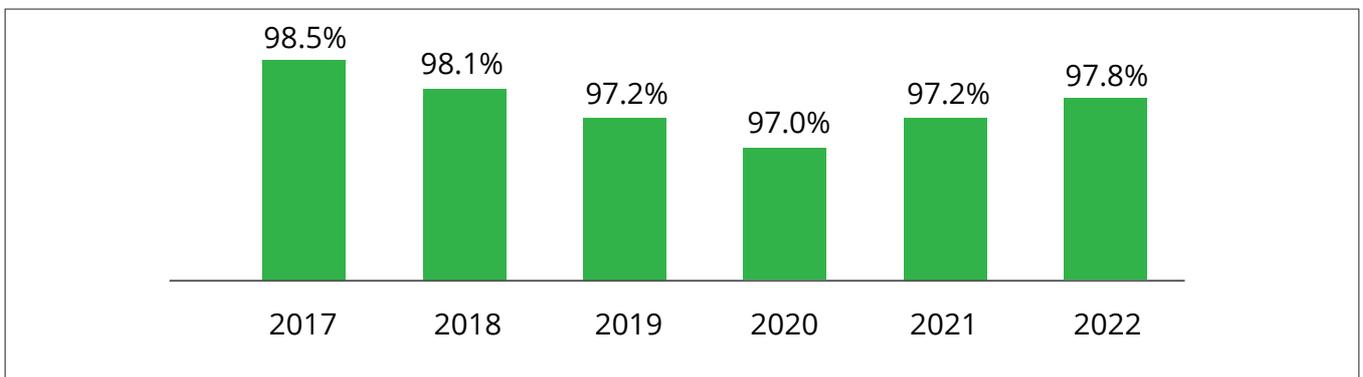
II. CCG 아젠다 ②

FY2022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상장회사(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재무제표 감사 의견

- 상장회사 2,427³⁾사의 FY2022 감사보고서를 분석하였으며, 분석대상 상장회사의 2,373사(97.8%)가 적정의견이었으며, 전기대비(97.2%) 0.2%p 상승함
 - 최근 6년간 큰 폭의 변동없이 완만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3> 최근 6년간 재무제표 감사의견 적정의견 비율 추이 ⁴⁾



상장회사(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재무제표 감사 의견

- FY2022 기준 상장회사 54사(2.2%)가 비적정 의견을 수령하여 전기대비(68사) 0.6%p 감소함
 - 한정 의견은 8사(0.3%)로 전기대비(10사) 0.1%p 감소함
 - 의견거절은 46사(1.9%)로 전기대비(58사) 0.5%p 감소함

<표 1> FY2022 상장회사 재무제표 감사의견 ⁵⁾

구분	시장유형(단위:사)				비율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소계	
적정	775	1,479	119	2,373	97.8%
비적정	10	34	10	54	2.2%
한정	2	4	2	8	0.3%
의견거절	8	30	8	46	1.9%
소계	785	1,513	129	2,427	100.0

3) 2022년 12월 말 기준 유가증권, 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법인이며 2023년 3월말 기준으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12월 법인으로 주권상장법인 및 DR(주식예탁증권)를 포함함

4) 금융감독원, 「2021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FY2017-FY2021 추이, 2022.08.17

5)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분석

II. CCG 아젠다 ②

FY2022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상장회사(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재무제표 감사 의견 (계속)

<표 2> FY2021 상장회사 시장유형별 재무제표 감사의견⁶⁾

구분	시장유형(단위:사)				비율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소계	
적정	785	1,463	112	2,360	97.2%
비적정	7	45	16	68	2.8%
한정	2	7	1	10	0.4%
의견거절	5	38	15	58	2.4%
소계	792	1,508	128	2,428	100%

□ 자산규모별 적정의견 비율은 기업규모가 낮을 수록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이며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의 적정의견 비율은 95%로 가장 낮은 수준임

- 소규모 기업일수록 재무구조가 약하거나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여 상대적으로 비적정의견 비중이 많은것으로 사료됨

<표 3> FY2022 상장회사 자산규모별 재무제표 감사의견 비율⁷⁾

구분	1천억원 미만		1천억~5천억원		5천억~2조원		2조원 이상		소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적정	806	95.0%	1,051	99.1%	319	99.4%	197	100.0%	2,373	97.8%
한정	6	0.7%	2	0.2%	-	-	-	-	8	0.3%
의견거절	36	4.2%	8	0.8%	2	0.6%	-	-	46	1.9%
소계	848	100.0%	1061	100.0%	321	100.0%	197	100.0%	2,427	100.0%

6) 금융감독원, 「2021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2022.08.17

7)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분석

II. CCG 아젠다 ②

FY2022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상장회사(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검토

- FY2022 상장회사 중 비적정 감사 및 검토 의견을 받은 기업은 총 84사로 전기대비 10사가 감소함
 - FY2022 감사대상인 자산총액(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 1,579사 중 30사 (1.9%)에서 비적정 감사 의견이 도출되어 전기대비 1.2%p 상승함
 - FY2021 감사대상인 자산총액(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 441사 중 3사(0.7%)에서 비적정 감사 의견
 - 검토대상인 자산총액(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 848사 중 54사 (6.4%)에서 비적정 검토 의견이 도출되어 전기대비 1.7%p 상승함
 - FY2021 검토대상인 자산총액(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 5천억원 미만 상장회사 1,923사 중 91사 (4.7%)로 비적정 검토 의견
- FY2021-FY2022 최근 2년간 자산총액(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 2조 이상인 상장회사는 모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인 점은 주목할 사안임

<표 4> FY2022 자산규모 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검토 의견 결과⁸⁾

시장구분	검토대상		감사대상				소계			
	1천억원 미만		1천억~5천억원		5천억~2조원				2조원 이상	
유가증권	5	9.3%	12	46.2%	3	75.0%	-	-	20	23.8%
코스닥	39	72.2%	14	53.8%	1	25.0%	-	-	54	64.3%
코넥스	10	18.5%	-	0.0%	-	0.0%	-	-	10	11.9%
소계	54	100%	26	100%	4	100%	-	0%	84	100%

<표 5> FY2021 자산규모 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검토 의견 결과⁹⁾

시장구분	검토대상		감사대상				소계			
	1천억원 미만		1천억~5천억원		5천억~2조원				2조원 이상	
유가증권	6	8.0%	4	25.0%	2	66.7%	-	-	12	12.8%
코스닥	51	68.0%	12	75.0%	1	33.3%	-	-	64	68.1%
코넥스	18	24.0%	-	-	-	-	-	-	18	19.1%
소계	75	100%	16	100%	3	100%	-	0%	94	100%

8) 2022년 12월 말 기준 유가증권, 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법인이며 2023년 3월말 기준으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12월 법인으로 주권상장법인과 DR(주식예탁증권)을 포함 9) 2021년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유가증권, 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법인으로 주권상장법인과 DR(주식예탁증권)을 포함

II. CCG 아젠다 ②

FY2022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내부통제 관점의 상장회사(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 FY2022 기준 회사 지배기구 등이 주목해야 할 내부통제 관점(재무제표 작성 절차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 포함)에서 FY2022 비적정 감사의견과 검토의견을 받은 84사는 총 279건의 비적정 사유가 파악되었음
- '최고경영진의 부적절 행위(25.8%)가 비적정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폐쇄적인 투자 의사결정 또는 부적절한 행위를 수행하여 회사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거나 회계처리 과정의 신뢰성 확보가 어려워지는 경우를 의미함
 -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환기되고 있는 항목인 '자금 통제 미비'(10.4%)도 비적정 주요 사유의 하나임
 - 자금통제활동 설계여부 확인 또는 기 설계된 자금통제 활동이 정확하고 충실하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임

<표 6> 내부통제 관점의 FY2021~FY2022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¹⁰⁾

비적정사유	회계연도			
	FY2022		FY2021	
최고경영진의 부적절 행위	72	25.8%	80	31.0%
회계 전문성 확보 미비	47	16.8%	38	14.7%
범위 제한	44	15.8%	41	15.9%
자금 통제 미비	29	10.4%	22	8.5%
당기 감사 중 재무제표 수정	21	7.5%	23	8.9%
내부감사기능 미비	20	7.2%	20	7.8%
비경상적 거래 통제 미비	11	3.9%	9	3.5%
기타 사유	7	2.5%	4	1.6%
업무 분장(Segregation of duty) 미비	6	2.2%	3	1.2%
지배기구의 비효과성	6	2.2%	4	1.6%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	5	1.8%	7	2.7%
임직원 윤리의식 또는 준법사항 준수 미비	3	1.1%	2	0.8%
정보기술통제(ITGC) 미비	3	1.1%	2	0.8%
법규 미준수	3	1.1%	0	0.0%
부적절한 공시 통제	2	0.7%	3	1.2%
소계	279	100%	258	100%

10)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분석, FY2021 및 FY2022 분석대상 총 회사 수는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상장법인으로 각각 2,428사, 2,427사임. 비적정 사유 중 '회계 전문성 확보 미비'에는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 관련 통제 미비의 사유를 포함하여 분류함

II. CCG 아젠다 ②

FY2022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 재무제표에 포함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통제 미비점(7.5%)도 주요 비적정사유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검토과정에서는 '회계 전문성 확보 미비'(16.8%)나 '정보기술통제 미비'(1.1%) 및 '업무분장 미비'(2.2%)와 같은 통제환경 또는 회계역량 등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됨
- 미국의 경우 내부통제 관점의 내부회계관리제도(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재무보고내부통제) 주요 비적정 사유로 '회계인력 전문성 및 인력 부족'(48.7%) 비중은 국내와 유사한 현황을 보여주고 있음
- 하지만 '정보기술통제'(44.2%),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34.5%) 및 '적시에 정확한 공시가 이뤄지지 않음'(23.9%)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해 국내 현황과 차이가 있음
 - 상기의 접근방법은 본질적 통제요소(통제환경, 회계역량 등)의 취약점까지 치유되어야 한다는 Top-Down 평가방식이 적용된 것임

<표 7> 최근 미국 ICFR 주요 비적정 사유 Top 5 ¹¹⁾

비적정사유	비중 (복수응답 포함)
회계인력 전문성 및 인력 부족	48.7%
정보기술통제 (ITGC)	44.2%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34.5%
적시에 정확한 공시가 이뤄지지 않음	23.9%
결산 시 발견된 중요한 회계처리 오류	19.2%

11) Audit Analytics, 「SOX 404 Disclosures, an eighteen-year reiew」, 2022.07

II. CCG 아젠다 ②

FY2022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검토 의견과 대표자 및 감사(위원회) 의견간 불일치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상 외부감사인은 운영실태에 대한 검토 또는 감사의견, 대표자는 운영현황 및 실태보고와 감사(위원회)는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시하는 것으로 요약됨
- 외부감사인이 FY2022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제시한 84사 중 경영진이 비적정의견을 낸 기업은 15사, 감사위원회가 비적정의견을 낸 기업은 20사로 의견불일치가 나타났음
-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의견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추후 경영진은 자사 실태를 제대로 반영한 자체평가를 진행하고, 감사(위원회)도 보다 실효성 있는 평가활동의 진행이 요구되는 시점임

<표 8>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상 포함할 공시 내용

보고자	보고서 상 포함 내용	공시사항	FY202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 비적정 의견 회사 수
대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회계 설계와 운영 • 상시적/정기적 점검체계 • 효과성 점검의 객관적 지표 • 최종의견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실태보고서 • 규정과 조직 및 인력사항 	15 (17.8%)
감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진의 부당한 개입 여부 확인 •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실질적 운영 평가 • 운영실태보고의 기준 및 절차 준수여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실태평가보고서 	20 (23.8%)
외부감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및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 또는 검토의견 	84 (100%)

II. CCG 아젠다 ②

FY2022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결언

- 재무제표 감사 적정의견 비율은 최근 3개년간 큰 변동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중임
 - 적정의견 비율 : FY2020 97% - FY2021 97.2% - FY2022 97.8%
- FY2022 상장회사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 및 검토 의견을 받은 기업은 총 84사로 유가증권시장 20사, 코스닥시장 54사와 코넥스시장 10사이며 전기대비 10사 감소함
 -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 상향에 대비한 회사의 선제적 노력으로 회계감사 과정에서의 회계처리 이슈의 감소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회사는 감사대상 30사(1.9%)로 전기대비 1.2%p 상승, 검토대상도 54사(6.4%)로 전기대비 1.7%p 상승하였는데 이는 FY2022부터 감사대상 회사가 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으로 확장된 과도기적인 시기 때문인 요인도 존재함
 - 중요한 점은 FY2023부터는 감사대상 기업이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 내부통제 관점에서 국내 FY2022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의 주요 사유는 '최고경영진의 부적절 행위'(25.8%) - '회계 전문성 확보 미비'(16.8%) - '범위 제한'(15.8%) - '자금 통제 미비'(10.4%) - '당기 감사 중 재무제표 수정'(7.5%) 순으로 나타남
 - 반면 미국의 경우 ICFR 비적정 의견의 주요 사유로 '정보기술통제'(44.2%),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34.5%) 및 '적시에 정확한 공시가 이뤄지지 않음'(23.9%) 항목이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은 국내 현실과 차이가 있음

II. CCG 아젠다 ②

FY2022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검토 의견과 대표자 및 감사(위원회) 의견간 불일치의 정도가 큼
 - 중단기 차원에서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해, 경영진은 자사 실태를 제대로 반영한 자체평가를 진행하고 감사(위원회)도 보다 실효성 있는 평가활동의 진행이 요구되는 시점임
- 최근 개정된 외부감사법 시행령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경영진의 회계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평가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인지 및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12,13)}
 -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에는 조치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함
 - 기업들의 준수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했던 점을 고려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은 회계감독기관(금융감독원)이 제정·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함

12) 금융위원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5.2

13)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2023.5.15

II. CCG 아젠다 ②

FY2022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별첨

<표 9>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 또는 검토 의견 원문

FY2022 비적정 사유 비중	내용
최고경영진의 부적절 행위 (2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의 투자금융상품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적합한 통제활동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으며, 금융상품의 회수가능가액에 대한 검토 통제를 포함하여 추정치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이 개입되는 통제활동의 운영 결과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연간운영계획에 따른 중간 및 기말평가 내역에 대해 경영진과 이사회 간의 의사소통을 하고 있지 않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활동을 수행할 책임이 있는 담당자, 책임자 및 이사회와 적절하게 의사소통 되고 있지 않습니다.
회계 전문성 확보 미비 (1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는 사업부진에 따른 인원 감소로 인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통제절차 운영이 미흡하여 검토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데 있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 및 수행의무에 대한 분석과 수익인식 회계정책 결정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통제절차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비점은 수익인식 등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기록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범위 제한 (1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는 우리에게 별첨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제시하였으나, 우리는 회사의 내부회계제도가 전반적으로 구축, 운영되고 있다는 확신을 위하여 필요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회사의 내부회계제도가 전반적으로 구축, 운영되고 있다는 확신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자금 통제 미비 (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는 자금프로세스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내부통제절차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금프로세스는 재무제표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미비점은 재무제표 모든 계정에 대해 걱정하게 기록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는 중요한 취약점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인감의 사용시 인감대장에 사용내역 및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관리를 통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거래사실의 완전성을 확인하는 통제절차가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았던 미비점이 보완 및 개선이 되어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미비점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사의 재무제표가 유의적인 거래의 누락 없이 완전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내부통제의 효과성 확인을 위한 절차를 실시할 수 없었습니다.

II. CCG 아젠다 ②

FY2022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별첨

<표 9>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 또는 검토 의견 원문 (계속)

FY2022 비적정 사유 비중	내용
<p>당기 감사 중 재무제표 수정 (7.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의 회계처리를 검토하는 내부통제의 미비로 인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한 감사 전 재무제표와 감사인에게 제출한 감사 전 재무제표의 유의적인 불일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사전에 적절한 내부통제에 의해 식별, 승인되어 적절한 내부통제를 거쳐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취약점의 징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이에 따른 중요한 오류사항에 대한 발견 등과 관련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통제절차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및 보고와 관련한 적절한 통제활동이 미흡하여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이후 감사인에 의한 수정권고사항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p>내부감사기능 미비 (7.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의 재무보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 감독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미비점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회사의 임직원이 저지른 부정이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상기 내부통제 미비점과 관련하여, 내부감사기구의 재무정보에 대한 검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독 기능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p>비경상적 거래통제 미비 (3.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매각 필요성, 매각상대방의 적정성, 매각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하는 통제활동이 적절히 운영되지 않아 회사 외부의 의사결정자가 회사의 내부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적절한 매각상대방에게 회사의 자산 또는 권리를 적절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고 매각할 수 있는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자금조달과정에서 자금조달의 필요성, 인수자의 적격성 및 계약조건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 논의 및 승인하는 과정에 대한 주요 통제활동이 설계되어 있지 않아 부적절한 인수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부적절한 인수자에게 회사의 이익을 이전할 수 있는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p>업무분장 미비 (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제가 설계되었으나 적절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통제담당자의 퇴사에 따른 업무승계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통제가 설계되었으나 운영되지 않은 내역을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미비점은 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적절히 기록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취약점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프로세스별 업무분장(Segregation Of Duty)의 주기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III. 데이터 포인트 ①

FY2022 KOSPI 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교육 현황

요약

- 감사(위원회)는 모범기준에 따라 직무의 효과적 수행에 기반이 되는 역량을 보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회사는 적절한 감사위원회 교육을 제공해야 함
- 본고에서는 KOSPI 200 기업의 FY2022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감사위원회 교육현황(횟수, 교육실시주체, 교육주제 및 유형)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사점 및 제언을 제공하고자 함

논의 배경

- 감사위원회는 모범기준에 따라 직무의 효과적 수행에 기반이 되는 역량을 보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회사는 적절한 감사위원회 교육을 제공해야 함
 - 감사위원회 교육은 신규 선임된 감사위원을 위한 입문교육과 감사위원회 임기동안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보수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1> 감사위원회 교육 관련 국내 법규

구분	내용
감사위원회 모범기준	<p>(III.5.1 원칙) 감사위원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회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p> <p>(III.5.2 교육유형) 감사위원에 대한 교육은 감사위원 선임 후 제공되어야 하는 입문교육과 감사위원 업무수행 과정에 제공되어야 하는 보수교육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p> <p>(III.5.3 교육내용) 감사위원의 입문교육은 감사위원회 업무내용 및 역할과 책임 그리고 회사의 경영환경, 주요이슈 등 감사위원으로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포함하며, 기존 감사위원의 보수교육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을 포함하여야 한다.</p>
지배구조 모범기준	<p>(2.5.10) 사외이사는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사내·외 교육에 임하여야 한다. 특히 신규 선임 이사는 직무 및 지배구조 관련 교육에 참가할 것을 권고한다.</p> <p>(충분한 교육 기회) 제공 이사는 직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바람직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특히 신규 선임된 이사는 직무 및 지배구조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이사의 역할 효율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p> <p>(4.1.3) (생략...)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감사업무는 전문성을 요한다. (생략...)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문기관에서 감사와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p>

III. 데이터 포인트 ①

FY2022 KOSPI 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교육 현황

<표2> 감사위원회 입문교육 및 보수교육의 예시 ¹⁾

구분	내용
입문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개요(연혁, 운영현황 등) • 산업 추세 • 회계정책 및 방침 •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 회사의 사업모델 및 전략의 개요 • 주요정책과 윤리 및 행동규범 • 기업지배구조 정책의 요구사항 • 주요 사업 및 재무적 리스크(임직원을 만나는 것 포함)
보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처리 관련 이슈 (수익인식, 퇴직연금,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등)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독, 리스크 감독 • 동종 업계 동향과 주요 변화 • 관련 법규 제·개정사항과 업계 제재현황

□ 한편, 2018년 사업보고서부터 감사(위원회) 교육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되었으며 본고에서는 KOSPI 200 기업의 FY2022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감사위원회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사점 및 제언을 제공하고자 함

FY2022 감사위원회 교육 현황

□ 2022년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KOSPI 200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내용에 대한 조사자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 교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교육 건은 별도로 기재하였고, 공시 서식 상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표3>의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참고함 ²⁾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에서 감사위원회 교육 인정 범위를 차용하여 단순 안건 설명은 교육으로 미인정함(<표4> 참고) ²⁾

<표3>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 현황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참석 감사위원	불참시 사유	주요 교육내용

1)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3 Corporate Governance Resource Guide,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2022.12
 2)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2023.02.20)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2022.3)을 참고함

III. 데이터 포인트 ①

FY2022 KOSPI 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교육 현황

<표3>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 현황 (계속)

구분	내용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23.0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가 공시대상기간 중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에 대해 교육일시, 교육실시주체, 참석 감사위원(성명 기재) 및 불참한 감사위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구체적인 교육내용 등을 기재한다. 교육을 여러 번 실시한 경우 일자별로 기재하고 교육 실시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사실 및 그 사유를 기재한다.

<표4>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구분	내용
핵심지표 준수현황 작성 기준 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순 감사위원회 회의 안건에 대한 설명은 교육에 해당하지 않음 단순한 서면 교육자료의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한 제공은 제외하며 대면 교육 혹은 화상 강의 등 대면강의에 준하는 경우만 인정함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및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 교육 내용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건(예: 감사위원회 업무와 무관한 미술 관련 교육, 심폐소생술 등)은 교육으로 미인정함
- 교육일자를 미기재한 건의 경우 당해연도의 교육으로 미인정함

1) 교육 실시 횟수

- KOSPI 200 기업의 FY2022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 횟수는 <표5>와 같으며, 상기의 설명과 같이 공시된 교육의 내용, 범위 및 공시 서식상의 오기재는 교육으로 미인정한 집계도 제시함
- 교육 실시 횟수는 미인정 교육을 차감한 회사 수를 기준으로, '1회'(73사, 37.2%) - '4~7회'(57사, 29.1%) - '2회'(29사, 14.8%) - '3회'(21사, 10.7%) - '0회'(10사, 5.1%) - '8회 이상'(6사, 3.1%) 순으로 조사되었고, 연 1회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교육을 미실시한 기업은 10사인 것으로 나타남

III. 데이터 포인트 ①

FY2022 KOSPI 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교육 현황

<표5> FY2022 KOSPI 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 현황: 횟수

횟수	교육 실시로 공시한 회사 수 (비율)	교육 실시 공시 건 중 미인정* 교육을 차감한 회사 수 (비율)	공시한 교육이 미인정 된 회사 수
8회 이상	7 (3.5%)	6 (3.1%)	1
4-7회	58 (29.0%)	57 (29.1%)	1
3회	21 (10.5%)	21 (10.7%)	0
2회	29 (14.5%)	29 (14.8%)	0
1회	76 (38.0%)	73 (37.2%)	3
0회	9 (4.5%)	10** (5.1%)	0
합계	200 (100%)	196 (100%)	5

* 단순 감사위원회 안건 설명, 날짜 미기재, 교육 내용 부적합 등

** A사는 교육 실시 횟수를 1회로 공시하였으나 본고에서는 해당 건이 교육으로 미인정되어 미실시 기업으로 분류됨

- 평균 감사위원회 교육 횟수는 '2.9회'이고, 교육 횟수가 많은 상위 3개 기업은 J사(33회), G사(18회), H사(13회)로 나타남

2) 교육 실시 주체

- KOSPI 200 기업의 FY2022 감사위원회 교육은 총 581회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교육 주체가 외부인력인 경우는 440회(75.7%), 내부인력인 경우 141회(24.3%)로 나타났고, 전체 교육 실시 주체 기준으로 '회계법인'(258회, 44.4%) - '협회·학회'(139회, 23.9%) - '위탁 교육기관'(23회, 4.0%) - '법무법인'(8회, 1.4%) - '기타'(12회, 2.1%) 순으로 나타남

<표6> FY2022 KOSPI 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 현황: 교육 실시 주체

구분	세부 구분	횟수(비율)
내부	내부인력	141 (24.3%)
	외부	
외부	회계법인	258 (44.4%)
	협회·학회	139 (23.9%)
	위탁 교육기관	23 (4.0%)
	법무법인	8 (1.4%)
	기타	12 (2.1%)
	합계	440 (75.7%)
총합 (비율)		581 (100%)

III. 데이터 포인트 ①

FY2022 KOSPI 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교육 현황

3) 교육 주제 및 유형

□ 1회의 교육이 복합적인 주제를 다룬 경우가 존재하여 주제별로 중복 집계한 결과를 <표7>에서 제시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171회, 24%) - '재무보고 감독'(123회, 17%) - '감사위원회 역할, 책임 및 운영'(96회, 14%) -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ESG 등) 감독'(81회, 11%) - '회사경영현황 및 업종현황'(69회, 10%) - '법/제도 및 감독 동향'(58회, 8%) - '리스크 감독'(46회, 6%) - '외부감사인 감독'(35회, 5%) - '기타'(23회, 3%) 순으로 나타남

- 가장 많이 다루어진 교육 주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이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교육은 내부회계관리규정의 포함사항³⁾으로, 동 규정 위반의 예방 및 사후조치에 대해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의 계획·성과·평가결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의무사항인 부분이 영향이 있을 것임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및 시행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당면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도로도 볼 수 있음
- 두번째로 많이 다루어진 교육 주제는 '재무보고 감독'이며, 감사위원회의 가장 기본적인 감독 영역이자 최근 많이 발생한 부정 및 횡령사건으로 인해 감사위원회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임
- 세번째로 많이 다루어진 교육 주제는 '감사위원회 역할, 책임 및 운영'이며 신규 선임된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입문교육의 대표적인 주제로 감사위원으로서의 역할, 책임, 관련 법규에 대한 내용이며 감사위원회의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근간이 되는 주제로 볼 수 있음
- 네번째로 많이 다루어진 교육 주제인 'ESG'는 최근 경영환경의 변화로 이슈가 되는 주제로, ESG정보의 공시는 비재무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나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감사위원회가 주의를 살피야 하는 영역임

3)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III. 데이터 포인트 ①

FY2022 KOSPI 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교육 현황

<표7> FY2022 KOSPI 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 현황: 교육 주제>

구분	내용	횟수(비율)
1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171 (24.1%)
2	재무보고 감독	123 (17.3%)
3	감사위원회 역할, 책임 및 운영	96 (13.5%)
4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ESG 등) 감독	81 (11.4%)
5	회사경영 및 업종 현황	69 (9.7%)
6	법/제도 및 감독 동향	58 (8.2%)
7	리스크 감독	46 (6.5%)
8	외부감사인 감독	35 (4.9%)
9	기타	23 (3.2%)
10	내부감사 감독	5 (0.7%)
11	교육내용 부적합 주제	2 (0.3%)
합계		709 (100%)

III. 데이터 포인트 ①

FY2022 KOSPI 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교육 현황

- 1회의 교육에서 '단일주제'만 다룬 경우와 2개 이상의 '복합주제'를 다룬 경우를 집계한 결과를 <표8>에서 제시하였으며, 단일주제만 다룬 경우는 479회(82.4%)이고, 여러 주제를 복합적으로 다룬 경우는 102회(17.6%)로 나타남

<표8> FY2022 KOSPI 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 현황: 단일/복합주제>

구분	횟수(비율)
단일주제	479 (82.4%)
복합주제(2개 이상)	102 (17.6%)
합계	581 (100%)

- 1회의 교육이 '입문교육' 과 '보수교육'의 주제를 모두 다룬 경우가 존재하여 주제별로 중복 집계한 결과를 <표9>에서 제시하였으며 '보수교육'(379회, 62.3%)이 '입문교육'(229회, 37.7%)보다 많이 실시된 것으로 조사됨

<표9> FY2022 KOSPI 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 현황: 교육유형(입문/보수)>

구분	횟수(비율)
입문교육	229 (37.7%)
보수교육	379 (62.3%)
합계	608 (100%)

시사점 및 제언

- 감사(위원회) 교육은 '내부인력'(25%)를 제외하고는 주로 '회계법인'에 의해 실시되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주제의 교육 수요가 높은 만큼 회계법인에서 주체하는 교육이 선호되는 것으로 보임
 - 회계법인을 비롯한 전문기관, 협회·학회, 법무법인, 비정부기관 등이 제공하는 교육(또는 세미나) 등은 다양한 산업의 이사, 감사위원을 만나 경험을 공유하고 전문가를 통해 최신 동향을 접할 수 있다는 면에서 유용함
 - 그러나 외부교육은 개별 기업이나 산업에 특화된 내용을 다루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서 회사의 필요성에 부합되는 주제와 회사 고유의 정책, 절차 및 사업목적을 다룰 수 있는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

III. 데이터 포인트 ①

FY2022 KOSPI 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교육 현황

- 감사위원회가 기존에 보유중인 지식과 역량을 평가한 후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접근방법이 유용할 것이고,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 교육 계획 수립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⁴⁾
 - 교육 계획을 단순하고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사전조사를 수행하고, 입문교육과 보수교육을 구분하여 실효적인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함
 - 교육주제가 결정되면 감사위원회 및 경영진은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활용 가능한 자원을 확인해야 함⁵⁾
 - 회사에 대한 지식이 있는 내부인력과 외부의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감사위원회 회의에 초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5)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3 Corporate Governance Resource Guide,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2022.12

IV. 주요 규제 동향 ①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

-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및 회계부정신고 제도 정비의 법제화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요약

-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외부감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및 동 시행령과 함께 작년 12월에 입법 예고된 2개의 하위규정이 5월 2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발표함
- 금융감독원은 올해 3분기 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을 확정할 계획임
- 본 개정은 금융위원회가 작년 10월에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따른 정책과제의 법제화 및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이며, 이를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 배경

-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외부감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및 동 시행령과 함께 작년 12월에 입법 예고된 2개의 하위규정(「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외감규정,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이하 포상규정)이 5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함¹⁾
 - 본 개정은 금융위원회가 작년 10월에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따른 정책과제의 법제화 및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이며, 이를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 1) 대형비상장사 기준 상향(자산 '1천억원'→ '5천억원')
- 대형비상장사의 기준이 '자산 1천억원 이상에서 '자산 5천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됨('23사업연도부터 적용)²⁾

1) 금융위원회, 「상장회사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 대형비상장회사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23.4.24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형비상장사가 아닌 비상장사는 대형비상장사에 부과되는 감사인 선임절차 등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없음(한국공인회계사회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FAQ, '23.01)

IV. 주요 규제 동향 ①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

<표1> 대형비상장사 기준 상향 개정사항

종전 ³⁾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 비상장사(자산 1천억원 이상)는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을 고려해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규율⁴⁾이 적용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개혁('18년)시 도입된 개념으로, 제도도입 초기에 광범위하게 설정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물적자원이 충분하지 못한 다수의 중소기업까지 대형 비상장사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면이 있어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합리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과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소속회사는 현행 기준(자산 1천억원)이 유지됨 비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의무, 감사인 주기적 지정대상도 이번 변경에 따라 조정됨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감독 내실화

- 경영진의 회계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함

<표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감독 개정사항

종전 ⁵⁾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에 따른 제재수준이 회사의 개선노력과 연계되지 않고 있어 자발적인 취약점 파악·시정 유인이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전 외감규정상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조치 1단계 가중됨 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설계·운영·평가·보고)이 운영되어 기업들의 준수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진의 회계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발적으로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에는 조치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은 회계감독기관(금융감독원)이 제정·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함

- 이를 위해 외감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23.5.2. 시행)⁵⁾

3) 금융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실시」, 2022.12.21

4)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선임위원회 설치 의무 등

5) 금융위원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5.2

IV. 주요 규제 동향 ①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

<표3> 외감규정 개정사항

구분	내용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기준 제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은 금융감독원이 제정하도록 별도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준수 의무를 명확화 함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에 따른 제재 가중사유 단서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 유도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 조치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단서 조항을 마련함
회계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제재수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자가 부정행위의 주도적 행위자가 아니라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종 부과징금 전액을 면제함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통보를 수사업무 자료 송부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양정시 반영함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규제개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진행중인 회사, 소규모 회사의 외부감사인에 대해 내부회계위반 과태료의 50%를 감경함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면제되어 비상장사와 유사한 내부회계 규제를 받게 될 예정임을 고려하여 위반결과를 '경미'로 양정함
제재정보 공개 관련 규제개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법행위의 재발방지, 제재 투명성·공정성 제고, 투자자보호 등을 위해 중요도가 높은 과실 위반행위는 공시대상에 포함 등

- 이에 금융감독원은 기업 경영자(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등의 책임의식 제고, 동 제도 운영 내실화 유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시 준거기준 활용 등을 위해 평가·보고지침을 마련할 예정임⁶⁾

<표4> 현 상장회사협의회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체계

구분	설계 및 운영 관련	평가 및 보고 관련
원칙적 적용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자율적 지침	설계·운영 적용기법(일반, 중소기업), 설계·운영 적용사례	평가·보고 적용기법 (일반, 중소기업)

↓
규정화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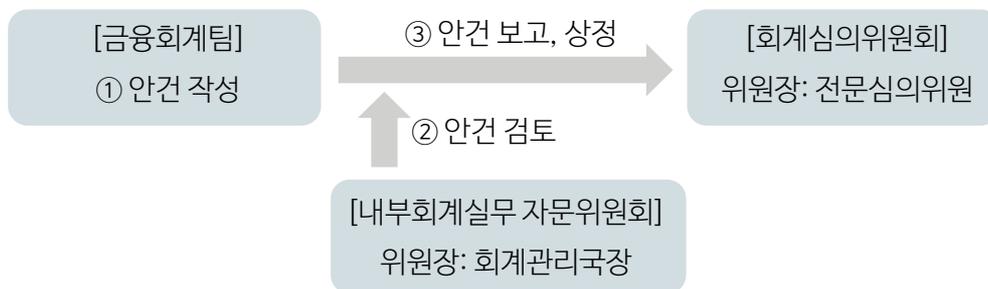
6)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2023.5.15

IV. 주요 규제 동향 ①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

- 현 자율규정의 필수사항 선별 및 명료화, 준거기준으로서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구성함⁷⁾
- 평가·보고지침은 자문위 검토 및 회계심의위원회⁸⁾ 의결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제·개정될 예정임

<그림1> 내부회계 평가·보고 지침 제·개정 절차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지침 제정방향은 자문위 첫 회의(23.5.12)에서 논의되었고, 그 내용은 <표5>에서 제시함

<표5>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지침 제정방향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까지 상장법인이 현 자율규정에 맞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감사를 대비한 점 등을 감안해 현 준거기준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유지 • 법규 요구사항을 평가·보고 지침에 반영하고, 핵심적인 절차는 서술 방식을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하여 기업이 준수해야 할 원칙을 명확히 제시

7) 평가·보고지침 제·개정시 자문, 실무 적용이슈 자문, 동 제도 운영 관련 의견수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8) 금융감독원 정관 규정에 따라 회계감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회계심의기구(총 7명)

IV. 주요 규제 동향 ①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

3) 회계부정행위 신고 활성화 유도

-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조치가 강화됨

<표6> 회계부정행위 신고 개정사항

종전 ⁹⁾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해 증선위 제재조치 완화(과징금 포함) 및 신고포상금 지급은 가능하나 엄격한 요건과 낮은 수준의 포상금 금액으로 인해 내부자가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할 유인이 부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증선위의 제재조치가 감면될 수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나 이상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가 감경될 수 있음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신고포상금 지급규모 확대(현재보다 5배 이상)를 위해 등급별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중요도가 낮은 차감요소는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상금 산정액 = 등급별 포상금 기준금액 × 차감요소를 반영한 기여도

<표7>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조치 감면 요건

내용
①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다른 관련자에게 강요하지 않았을 것
② 신고사실이 증권선물위원회 등이 기 보유한 정보가 아닐 것
③ 조사완료시까지 협조할 것

- 이를 위해 포상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23.5.2. 시행)¹⁰⁾

<표8> 포상규정 개정사항

구분	내용
건 별 포상한도 기준금액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행위의 중요도 등급을 간소화(10개→4개)하고, 등급별 기준금액도 전반적으로 상향함
기여도 산정 항목 중 정성적 요소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감요소 중 자의적 또는 정성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세부 산정항목을 조정 및 단순화함
금융감독원장 조치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포상 심의·의결 근거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권선물위원회의 포상 심의·의결 대상에 금감원장 조치(경고 또는 주의)도 포함되도록 근거를 명확화

9) 금융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실시」, 2022.12.21

10) 금융위원회,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5.2

IV. 주요 규제 동향 ①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

기대효과 및 향후일정

- 감독당국은 본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소규모 비상장사의 회계관리 부담이 완화되고, 회계부정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함
- 본 개정은 5월 2일부터 시행되며, 대형비상장사 기준 상향은 정책효과를 높이고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023사업연도('23.1.1 이후 시작 사업연도)부터 즉시 적용됨
- 금융감독원은 올해 3분기 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함¹¹⁾

<표9>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의 향후 일정

구분	내용
5월 12일(1차자문위)	• 자문위 운영방안 및 평가·보고지침 제정 방향 논의
6~7월(2·3차)	• 평가·보고지침 초안 마련 및 자문위 논의
8월(4차자문위)	• 평가·보고지침(안) 마련 및 회계심의위원회 의결
9월	• 외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 세부 일정은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1)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2023.5.15

IV. 주요 규제 동향 ②

ISSB, SASB 기준 국제적용가능성 개선을 위한 방법론 공개초안 발표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요약

- 국제회계기준(IFRS, 이하 "IFRS") 재단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이하 "ISSB")는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 이하 "SASB")¹⁾ 기준의 일부 지침이 특정 관할권(미국)의 법률·규정을 참조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힘
- ISSB는 SASB 기준의 국제 적용가능성 개선을 위한 방법론의 공개초안을 발표함
- SASB 표준 개선을 통해 다양한 지역의 기업에서 지금보다 SASB 표준을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논의배경

- 국제회계기준(IFRS, 이하 "IFRS") 재단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이하 "ISSB")는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 이하 "SASB")¹⁾ 기준의 일부 지침이 특정 관할권(미국)의 법률·규정을 참조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힘
 - ISSB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SASB 기준과의 통합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ISSB 공시기준 공개초안은 상당 부분 SASB 기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²⁾
 - S&P 글로벌 1200에 속한 기업 중 약 72%는 이미 SASB 표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³⁾
 - 국내 금융위원회도 SASB 기준 국문 번역본을 공개하였고, SASB 표준의 총 77개 산업별 기준 중 40개 산업 기준이 번역된 상태임
- ISSB는 SASB 기준의 국제 적용가능성 개선을 위한 방법론의 공개초안⁴⁾을 발표함(23.5.11)⁵⁾
 - SASB 표준 개선을 통해 다양한 지역의 기업에서 지금보다 SASB 표준을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지난 2011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속한 기업들의 공시기준을 마련하고자 설립됨

2) ISSB의 주요 방향성 중 하나는 '기준 기준의 활용'으로, SASB, TCFD 등 기준의 비재무 공시기준을 반영하며, 산업별 지표는 SASB를 참고하고 TCFD의 기본 골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공시를 요구함

3) Governance and Accountability Institute, 「2022 Sustainability Reporting In Focus」, 2022.11

4) 한국회계기준원, 「ISSB, SASB 기준 국제적용가능성 개선을 위한 방법론 공개초안 발표」, 2023.5.16

5) Methodology for Enhancing the International Applicability of the SASB® Standards and SASB Standards Taxonomy Updates

ISSB, SASB 기준 국제적용가능성 개선을 위한 방법론 공개초안 발표

공개초안 주요내용

- 공개초안의 적용범위는 SASB 기준 지표 중 기후 외 주제와 관련된 지표에 한정됨
 - 기후 관련 SASB 지표는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이하, "IFRS S2")와의 일관성을 위해 S2의 공표시기에 맞추어 별도로 개정작업을 수행할 예정임
- 공개초안에서는 SASB 기준의 본래 의도는 유지하면서 국제 적용가능성을 개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의 방법론을 제안함(단계적 적용)

<표1> 공개초안의 방법론

구분	내용
1단계	• 특정 관할권의 참조사항을 국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참조사항으로 수정
2단계	• 특정 관할권의 참조사항을 보다 일반화된 정의로 수정
3단계	• 특정 관할권의 참조사항을 대신하여 기업이 속한 관할권의 법률·규정 등의 참조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4단계	• 국제적 적용에 적합하지 않은 지표는 삭제
5단계	• 본래의 의도와 일치하는 적용 가능한 다른 대체지표가 있는 경우 해당 지표로 대체

향후일정

- ISSB는 오는 8월까지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SASB 기준의 개정방법을 결정하여 2023년 말까지(IFRS S1 일반 요구사항의 시행일 전) 이와 관련된 SASB 개정을 완료할 예정임
 - 이에 한국회계기준원은 본 공개초안을 검토하여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할 것이며,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의 의결을 거쳐 ISSB에 국내 의견을 전달할 예정임

<표2> 한국회계기준원 향후일정

구분	내용
'23.5월 중	• 공개초안 주요내용 요약 공개
'23.5월~7월	• 국내 이해관계자, KSSB 자문위 등과 국내 의견 논의
'23.6월 초	• 공개초안 본문 번역본 및 예비적 검토내용 공개
'23.7월 말	• KSSB 최종 의견 심의 및 의결, ISSB 의견제출

6) IFRS S2 Climate-related Disclosures

7) 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회계기준 제정을 담당하는 한국회계기준원 내 설립된 위원회

V. FAQ ①

사외이사 겸직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Q. A 제조업 상장법인 사외이사로 근무중임. 최근 B 은행지주회사의 사외이사 영입 제안을 받았는데, A사와 B사의 겸직가능 여부 및 근거를 문의함

- 상법과 동법 시행령은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업무집중과 이해충돌을 배제하고자 법인의 상장여부에 관계없이 사외이사의 겸직한도를 제한하고 있음
- 상법상 상장법인의 사외이사는 자신의 회사를 제외한 2개 이상의 다른 회사(비상장기업 포함)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음
 - 상법 시행령은 사외이사의 겸직에 관하여 해당 상장회사 외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자는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최대 2개 까지만 겸직 가능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 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 7.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상법 시행령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 ⑤ 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3.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¹⁾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자

- 다만, 질문자가 문의한 A 제조업 상장법인 사외이사와 B 은행지주회사 사외이사의 겸임은 금융사지배구조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가능하지 않음
 - 겸임하려는 회사가 은행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은행지주회사 외의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재임은 가능하지 않아 질문자는 현실적으로 A 제조업 상장법인 사외이사에 국한된 역할수행 또는 은행/은행지주회사가 아닌 상장법인/비상장법인의 사외이사로의 겸임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²⁾

1) 상법에서 말하는 회사란 “상행위나 그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의미하며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에 이사로 재직하는 경우는 사외이사의 겸직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통설임

2) 본 내용은 해당 법률에 의거한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의 임의적인 해석으로, 현실적으로 유사한 상황을 겪으시는 경우 법 전문가와의 자문이 필요함

V. FAQ ①

사외이사 겸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다만, 사외이사가 됨으로써 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8. 그 밖에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금융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상장회사의 자격요건)

- ③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해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가.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 나.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외의 다른 회사(해당 은행의 자회사등, 해당 은행의 자은행,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 다.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은행지주회사 외의 다른 회사(해당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V. FAQ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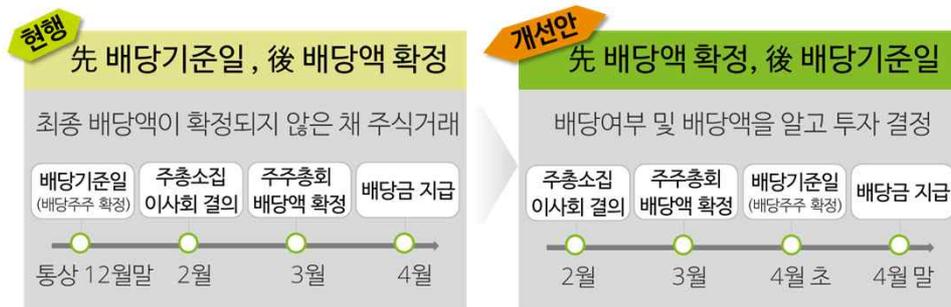
배당절차 개선방안 적용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Q. 회사가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적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어떻게 정비해야 하나요?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 기준일'을 골자로 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함(23.1.31)¹⁾

<그림1> 금융위원회가 제시하는 배당제도 개선안²⁾



- 대부분 회사의 정관은 배당기준일을 의결권기준일과 동일하게 직전년도 말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후속조치로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는 상장사 표준정관을 개정함(상장협 '23.2.8/코스닥협 2.15)
 - 개정 표준정관은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의결권기준일)와 배당받을 주주(배당기준일)를 분리하고,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함³⁾

- 각 기업에서는 내부규범인 정관상 기준일 및 배당절차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비해야 함^{4) 5)}

회사가 배당절차 개선방안 적용을 위해 정비해야 하는 정관 내용

- (사업년도 말일 ≠ 배당기준일) 배당기준일을 매 결산기 말일 이후의 날로 정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정기(결산)배당관련 배당기준일을 결산기 말일을 전제로 하는 정관규정(ex. 결산기 말일을 배당기산일로 정하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경하여야 함
- (의결권 기준일 ≠ 배당기준일) 의결권기준일과와 배당기준일을 분리하여 규정하여야 함
- (선 배당액 확정 & 후 배당기준일 설정) 배당기준일을 배당액을 정하는 주주총회일 이후의 날로 이사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정관에 배당결정일 이후의 날로 특정하여야 함

1) 금융위원회,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2023.01.31
 2)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별첨: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2023.02
 3)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협, 배당절차 개선방안 반영 표준정관 개정』, 2023.02.08
 4) 금융감독원, 『내년부터 배당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지급하려면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2023.02.24
 5)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2월 결산 상장회사 선진국형 배당절차 관련 정관 채택 현황』, 2023.03.29

V. FAQ 2

배당절차 개선방안 적용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

- 중간배당의 경우 배당기준일은 중간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일 이후로 정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함⁶⁾
- 다만 자본시장법⁶⁾ 상 현행 분기배당은 분기 배당을 받을 주주가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당시의 주주'로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법 개정 이후의 개정사항을 정관에 반영이 선행되어야 이행 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함⁷⁾

관련법규(상장회사 표준정관)

제45조(이익배당)

- ②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5조의2(중간배당)

-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 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

7) 금융감독원, 「내년부터 배당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지급하려면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2023.02.24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ontact



김한석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Leader



정현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김학범 파트너

Partner / Risk Advisory



오정훈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